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을 토대로 한 노인 단독가계의 경제복지 분석

An Analysis of the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Households based on Housing Ownership and Housing Costs

심 영
서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환경학과

Shim, Young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households based on the housing ownership and the housing cost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upled elderly and the singl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household type was related to the housing ownership, showing that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owned the housing less than the coupled elderly did. There was a difference in housing costs between the single elderly and the coupled elderly, showing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had higher housing costs than the coupled elderly households. The housing ownership was significantly related, but the housing costs negatively relat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household, housing ownership, housing cost, economic well-being

I. 서 론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인구 구조적 변화는 노인이 자녀와 분리되어 단독가계를 형성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계 형태의 증가이다. 노인 단독가계의 증가는 특히 그 가계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제 상황에 그 관심을 집중하도록 한다. 이는 노인의 경제상태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책임의식 약화 등은 노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므로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경제상태에 관한 연구 및 이를 통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히 노인 단독가계의 경제적 여건은 노인의 삶의 질,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원체계가 아직은 부족한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단독가계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 등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을 근거로 노인 단독가계의 노인들이 경험하는 경제복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유형별로 노인 단독가계의 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을 분석한다. 둘

Corresponding author : Shim, Young
Tel : 043) 299-8764 Fax : 043) 299-8760
E-mail : syoung@seowon.ac.kr

째, 가계 유형별로 노인 단독가계의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가계 유형은 가구주의 결혼상태에 따라 유배우자 노인단독가계(이하 유배우자 노인가계)와 무배우자 노인단독가계(이하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는 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라 노인이 경험하는 경제상태는 매우 상이하다(Hurd & Wise, 1989; Radner, 1992; McLaughlin & Jensen, 1993; Schwenk, 1994; DeVaney, 1995;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노인가계의 경제복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주거소유형태와 주거비용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을 고찰하고, 신고전 수요 이론을 토대로 노인가계의 경제복지 측정으로서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과 가계의 경제복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노인가계의 경제복지 측정

가계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경제상태는 곧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의 충족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곧 가계가 충족하기를 원하는 욕구충족의 수단은 궁극적 산출인 경제적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가계가 획득하는 소득 혹은 이용 가능한 경제자원 즉, 경제적 구매력과 가계가 재화와 용역을 위해 얼마만큼 소비지출하였는가의 총 소비지출 문제는 그 가계가 누리는 경제적 복지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복지를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가계의 경제복지가 어떠한가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들(Danziger, Van Der Gaag, Smolensky & Taussig, 1982; Borsch-Supan & Stahl, 1991; McLaughlin & Jensen, 1993;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 김연정, 1998)은 소득 혹은 재정상태, 총 소비지출을 근거로 비노인 가계와의 비교를 통해 그 상대적인 경제 정도를 파악한다. 그러나 노인의 소비수준이나 생활표준은 노인의 욕구 혹은 기호의 변화, 따라서 소비욕구의 변화로 인해 비노인 가계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총 소비지출의 단순한 잣대를 가지고 노인이 경험하는 경제복지의 우위를, 특히 비노인 가계의 경제복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생애주기가설의 관점에서 노인기의 소비지출은 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증연구에 따르면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라기 보다는 소비지출이 소득에 비해 적은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Danziger, Van Der Gaag, Smolensky & Taussig, 1982; Borsch-Supan & Stahl, 1991). 이는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이 낮다는 점, 자녀로부터 직접 지불되어질 수 있는 지출이 있다는 점, 혹은 현물의 형태로 들어오는 생활용품 등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가계에 있어서 특히 비노인 가계의 경제복지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소득이나 총 소비지출을 도구로 한 단순한 경제복지의 분석은 그 한계를 갖을 수 있다.

한편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도구는 소비지출패턴이다. 소비지출패턴은 소비지출 비목들이 상호 관련성을 갖으며 구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계의 소비는 여러 가지 상이한 소비지출 비목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소비지출 비목들로 구성되고 그러한 소비지출 비목들은 결합하여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는 것이다(Kyrk, 1933, Hoyt, 1959; Brown & Deaton, 1972; Michael & Becker, 1973; Magrabi, Chung, Cha & Yang, 1991; 손상희, 1993; 정영숙, 1999 & 2000). 따라서 소비수준 뿐 아니라 어떠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였는가 하는 소비지출 비목들간의 균형 및 조화의 문제는 가계의 경제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Hoyt, 1938 & 1959; Michael & Becker, 1973; Magrabi, Chung, Cha & Yang, 1991; 손상희, 1993; 정영숙, 1999 & 2000). 이에 따르면 결국 소비지출 비목들간의 불균형은 가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 즉, 복지를 저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균형적인 소비지출패턴은 주어진 예산이 가계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소비지출 비목들에 적합하게 배분 할당되지 못하고 과다한 지출이 어느 한, 두가지 지출비목으로 할당되며 따라서 그것(들)을 제외한 기타 소비지출을 위한 예산 비율은 주어진 예산하에서 적어질 수밖에 없는 편중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출비목들간의 불균형적인 예산 할당은 결과적으로 소비지출 비목들간의 불균형적인 소비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가계가 경험하게 되는 복지 정도는 다양한 욕구들이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지출비목들간의 균형적 예산할당의 경우보다 감소될 수밖에 없다.

소비지출패턴을 토대로 한 경제복지 분석은 엥겔의 법칙에서 잘 나타난다. 엥겔의 법칙은 총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토대로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복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식료품비의 지출 비율이 클수록 가계의 경제복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식료품비는 비탄력적 소비지출 비목으로 가계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져야 하는 지출비목으로 이를 위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기타 다른 소비용품 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만일 가계의 주어진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필수적 소비지출 비목인 식료품비에 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기타 다른 지출비목들을 위한 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균형적인 소비지출패턴을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곧 다양한 욕구들의 균형적 충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경제복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필수적이며 비탄력적 지출비목으로 간주되는 주택과 경제복지와의 관계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주택은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에 대한 필요를 충족한다고 하는 것이 덜 긴박한 필요나 욕구들보다 우선적으로 취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기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은 지대하여 생애주기에 있어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는 사회생활의 축소, 신체적 허약함의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의 중심이 주거공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한다(이가옥, 2000). 이처럼 주택은 식료품과 같이 노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지출비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식료품 지출비목과는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주택은 식료품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변화의 용이성 측면이다. 주택 상품은 단위 묶음이 큰 것으로 가분성(divisibility)을 갖지 못하거나 어렵다(장은정, 1990). 즉, 주택은 경제 사정에 따라 혹은 선호나 기호에 따라 필요한 공간만큼 단위 묶음으로부터 분리하여 구매할 수 없거나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변화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일정기간 동안 가분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식료품보다 주택은 그 선택 변화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즉, 주거공간의 비이동성 경향을 의미하며 따라서 식료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변화의 용이성과 관련된 또 한가지 점은 주택은 단위 묶음이 클 뿐 아니라 단위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목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은 어느 일정수준까지의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는 주거공간의 변화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또한 변화의 용이성 측면에서 볼 때 주거공간의 확보가 식료품에 비해 더 비탄력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필요성 그 자체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지출의 변화를 토대로 소비지출 비목의 필수적 성격을 분석하는 소득탄력성에 의하면 주거비 지출은 식료품비 지출보다 더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연보의 소비지출 자료를 토대로 한 양세정(1991)의 연구에 의하면 식료품비는 .75, 주거비(주거관련비용을 모두 포함)는 .42 소득탄력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곧 가계의 경제변화에 대해 주거비가 더 비탄력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즈음과 같이 실질 소득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전·월세값이 크게 상승하는 경제 환경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비자가의 노인가계가 경험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이 강하다(윤장섭, 1982). 따라서 가계

의 생활주기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내집 마련을 가계의 재무설계 목표상 우선 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라면 비노인 가계에 비해 노인가계가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기까지 내집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열악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셋째, 노인의 식료품 섭취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도 특히 건강이나 만성적 질병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Weimer, 1997) 감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식료품 섭취 변화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도 별 무리없이 자유로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식료품 지출비율의 감소는 노인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경제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되어진 점들은 곧 식료품비 지출에 의한 노인가계의 경제복지 분석은 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반면에 주거공간, 주택은 가계의 경제복지 상태를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경제복지 분석은 그 타당성을 갖는다.

2.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 측정의 개념적 틀

여기에서는 경제선택에 관한 가계의 선택행동을 분석하는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신고전 수요 이론을 토대로 노인가계의 경제복지 측정으로서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과 가계의 경제복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고, 이러한 개념적 틀로부터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문제를 유도하고자 한다.

1) 신고전 수요 이론의 응용

신고전 수요 이론(Neoclassical Demand Theory)은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의 개념을 토대로 개개의 가계가 소비재화와 용역에 대해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설명한다(Cochrane & Bell, 1956; Brown & Deaton, 1972; Deaton & Muellbauer, 1980; Raunikar & Huang, 1987). 효용극대화에 따르면 가계는 어떤 일정기간 동안 주어진 예산으로 총효용을 극대화하고자 소비재화와 용역을 선택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예산으로 시장의 소비재화와 용역을 선택해야 하는 가계는 결국 총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신고전 수요 이론의 배경을 이루는 한계효용체감과 한계효용등가의 개념은 결국 가계의 총효용은 그가 선택하는 소비재화와 용역의 총체적인 양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효용은 가계가 소비재화와 용역들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계의 경제복지는 주어진 예산 혹은 흔히 소득으로 소비재화와 용역을 선택하고 소비함으로서 얻어지는 만족의 상태를 의미한다(Hoyt, 1959; Michael & Becker, 1973; Magrabi, Chung, Cha & Yang, 1991; 손상희, 1993; 정영숙, 1999 & 2000). 곧 경제복지는 예산의 제약하에서 소비재화와 용역을 선택하고 소비한 결과이며, 결국 신고전 수요 이론의 총효용과 유사한 혹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계의 만족정도 즉, 경제복지는 예산의 제약하에서 가계가 선택하고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체적인 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가계가 소비재화와 용역들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제안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경제복지와 후자와의 관계를 중점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한 점들을 토대로 하여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과 가계의 경제복지와의 관계를 단순한 조건하에서 규명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가계의 지출비목은 주거와 비주거의 단지 두가지 지출비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예산은 주거와 비주거 지출비목에 배분 할당된다고 가정한다. 둘째, 가계는 주어진 가처분 소득을 모두 지출에만 할당한다. 곧, 가처분 소득액과 소비지출액은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가계의 총효용 즉, 만족상태는 주거와 비주거에 의해 결정되며 함수관계 (1)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효용이 경제복지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함수관계 (1)은 (2)로, $x_i^*p_i$는 e_i 이므로 함수관계 (2)는 (3)으로 표현된다. 주거와 비주거의 지

출을 위해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가계의 주어진 예산은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은 일정기간 동안의 주거와 비주거 지출 비목의 지출묶음과 예산을 보여준다.

$$U = u(x_h, x_{nonh}) \quad \cdots\cdots (1)$$
$$EWB = u(x_h, x_{nonh}) \quad \cdots\cdots (2)$$
$$EWB = u(e_h, e_{nonh}) \quad \cdots\cdots (3)$$
$$x_h * p_h + x_{nonh} * p_{nonh} = EXP$$
$$\text{따라서 } eh + e_{nonh} = EXP \quad \cdots\cdots (4)$$

여기에서 U는 총효용, x_h는 주거, x_{nonh} 는 주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비재화와 용역을 포함하는 비주거, e_h는 주거비 지출, e_{nonh}는 비주거비 지출, p_h는 주거 가격 혹은 비용, p_{nonh}는 비주거 가격 혹은 비용, EXP는 총 소비지출, EWB는 가계의 경제복지를 나타낸다.

가계의 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을 토대로 가계의 경제복지가 어떠한가의 분석을 용이하도록 여기에서도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을 가정한다. 첫째,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와 비자가로 이분류하고, 비자가는 월세, 전세 등 자가를 제외한 기타 모든 주택소유형태를 포함한다. 둘째, 노인가계는 현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한 집이 없다할지라도 그 시점에서 내집 마련에 대한 특별한 욕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비자가 주택소유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친숙해진 환경을 쉽게 바꾸려하지 않는 노인의 성향은 주거공간에 대한 노인의 비이동성 성향(장온정, 1990; 이가옥, 1992)에서도 나타나, 이로 인해 현 시점에서 노인가계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할지라도 현재의 주거수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비자가와 자가의 주거공간은 동일한 주거수준으로, 따라서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넷째, 주택소유형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예산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을 토대로 먼저 노인가계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그 노인가계는 주어진 예산으로 주거와 비주거의 소비를 위한 예산 할당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식 (5)와 같은 예산 배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림 1의 선 a는 비자가 노인가계의 예산선이며, 점 A는 비자가의 노인가계가 가장 만족한 상태의 효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와 비주거의 지출묶음(h_1, $nonh_1$)을 보여준다.

$$h_1 * p_{h1} + nonh_1 * pnonh_1 = EXP_1$$
$$e_{h1} + e_{nonh1} = EXP_1 \quad \cdots\cdots (5)$$

한편 만일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노인가계는 주어진 예산(EXP_1)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앞에서의 가정들을 토대로 한다면 자가의 노인가계는 어느 일정시점에서 주거공간에 대한 지출없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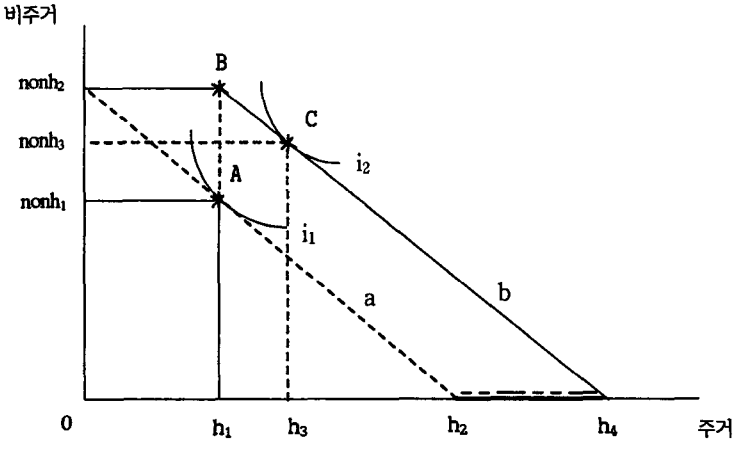

그림 1. 노인가계의 주거와 비주거의 지출묶음

(다시 말하면, 주거 소비에 대한 비용을 치루지 않더라도, 따라서 p_{h1} 은 0으로 간주됨) 비자가의 가계와 동일한 수준(h_1)의 주거 소비를 통해 효용을 제공받으며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부 비주거의 소비를 위해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의 점 B(h1, nonh2)의 지출묶음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그림 1의 선 b는 자가 노인가계의 예산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비자가의 노인가계에 비해 자가의 노인가계는 그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공간의 가치만큼 소득을 더 확보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주거공간의 소비를 위한 비용 혹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가 지불하는 수준에서의 주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의 가치는 임대등가법(the rental equivalent approach)에 의하면 만일 가계가 주택 시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거공간을 소비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주택의 임대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Magrabi, Chung, Cha & Yang, 1991). 결과적으로 집을 소유한 노인가계는 자신의 소득(EXP_1) 전부를 비주거에 할당하고서도 h_1 의 주거공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비자가의 노인가계가 주거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e_{h1} 만큼의 예산을 더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가를 소유하였을 경우 노인가계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그만큼(e_{h1}, 그림 1의 h_4 - h_2) 소득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집을 소유한 노인가계의 예산은 식 (6)과 같다.

$$EXP_1 + h_1 * p_{h1} = EXP_2$$
$$EXP_1 + e_{h1} = EXP_2 \quad \cdots\cdots (6)$$

소득효과에 의하면 집을 소유한 노인가계는 지출예산 배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며, 현 시점에서의 주거와 비주거 수준(h_1, $nonh_2$)으로부터 그림 1의 점 C(h_3, $nonh_3$) 수준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1에서 i_1이 i_2 보다 더 많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노인가계에게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의 비이동성 경향으로 인해 자가의 노인가계는 현재 상태에서의 주거 수준(h_1)을 변화하고자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며 따라서 e_{h1} 에 의한 소득효과는 주거와 비주거 지출예산 배분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림 1의 점 B(h_1, $nonh_2$) 묶음과 같은 지출모습에 머무르게 된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비록 소득효과가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하도록 자가 노인가계의 예산 지출배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주거의 차이($nonh_2$ - $nonh_1$)로 인해 집을 소유한 노인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복지와 집을 소유하지 못한 노인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복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자가의 노인가계가 비자가의 가계보다 그 복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이 있는 노인가계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비용부담이 있는 노인 가계는 그로 인해 주어진 예산 할당의 문제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복지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안된 개념적 틀에 의하면 노인가계의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과 경제복지와의 관계는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노인가계의 주택소유형태와 경제복지는 관련이 있는가?

1.2 자가 노인가계의 경제복지와 비자가 노인가계의 경제복지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노인가계의 주거비용과 경제복지는 관련이 있는가?

2.2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노인가계의 경제복지와 주거비용 부담이 없는 노인 가계의 경제복지는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가계(부부 중 1인 이상이 60세 이상)[1]를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환경실태를 조사한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지역과 노인인구 구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6개 시·군 단위에서 각각 한 개의 지역을 선정하고 북부 지역으로 제천과 충주의 2개 지역, 중부 지역으로 청주와 청원의 2개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는 옥천과 진천의 2개 지역에서 의도적 표본추출과 더불어 편의적 표본추출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995년 9월 20일 - 10월 10일 청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조사는 1995년 11월 15일부터 1달간 167 노인 단독가계들을 개별방문하고 각 가계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구주)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2].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으로는 조사대상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들을 위한 분석에 앞서 먼저 가계 유형과 주택소유형태와의 관련성, 가계 유형에 따른 주거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χ^2 검증,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1과 1.2는 주택소유형태와 경제복지와의 관련성과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경제복지 차이 분석으로, 이를 위해 교차분석 및 χ^2 검증,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1의 주거비용과 경제복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연구문제 2.2의 주거비용부담 유무에 따른 경제복지의 차이 분석은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분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크기의 한계로 인하여 자가와 비자가로 이분류하였다. 주거비용은 일반적으로 가계가 지불해야 하는 집세, 주거유지비 등의 주거관련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주거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소유형태는 주거관련 비용 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양세화, 오찬옥, 양세정, 1999), 주거 관련 어떤 다른 비용보다 필수적 성격이 가장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생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기보다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인 집세로 국한한다. 이는 본 연구가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주거비용을 토대로 한 경제복지 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더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거비용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주거비 지출액과 총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주거비 지출비율의 두 가지 형태로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주거비용부담 유무는 주거비 지출액과 지출비율의 유무로 정의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상태 즉, 경제적 복지는 가계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 이상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 1996)으로, 가계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Abdel-Ghany & Sharpe, 1997; 최혜경, 1985; 박경란·제미경·오찬옥, 1995; 심영·김대년·조명희·조영희,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가계의 생활만족도를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복지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노인이 경험하는 생활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관련성 분석에서는 불만족, 보통, 만족의 명목척도로 사용하

1)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55세를 노인의 기준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중간점인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60세를 노인의 연령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55 - 60세의 퇴직, 만 60세의 회갑, 그리고 한국노인 스스로 60세를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또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도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노인가계로 정의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자료는 시기적으로 뒤늦은 자료임에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필요로 되는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기에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였고, 차이 분석에서는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5점에 이르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pc windows를 사용하였다.

4.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계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교육정도를 보면 유배우자 노인가계와 무배우자 노인가계 모두 무학(각각 39.8%, 57.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무학 정도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유무는 노인가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같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유배우자 노인가계와 무배우자 노인가계 모두 도시, 농촌, 도시근교의 순으로 그 비중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유배우자 노인가계가 약 65세, 무배우자 노인가계 가구주는 약 71세로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을 보면, 유배우자 노인가계는 880,000원으로 무배우 노인가계의 457,000원과 비교하였을 때 약 1.93배정도 많았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가계는 1인당 212,293.1원으로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186,087.6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 분석

가계의 주택소유형태를 자가와 비자가로 이분류하고 가계 유형과 주택소유형태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인가계가 어떠한 가계 유형인가와 주택소유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자 노인가계는 자가의 주택소유형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비자가의 주택소유형태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자 노인가계에 비해 무배우자 노인가계가 직면하게 될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가계 유형과 주택소유형태의 관련성 분석

	자가	비자가	계
유배우자 노인가계	75 (67.6)	18 (34.6)	93 (57.1)
무배우자 노인가계	36 (32.4)	34 (65.4)	70 (42.9)
소계	52 (100.0)	111(100.0)	163 (100.0)

x^2 = 15.693 df = 1 p < .0001

가계 유형별 주거비 지출액과 주거비 지출비율의 두 측면에서 주거비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조사대상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

특성 \ 노인가계		전체 노인가계 (N = 162)	유배우자 노인가계 (n = 93)	무배우자 노인가계 (n = 66)
교육정도	무학	76 (47.0)	37 (39.8)	38 (57.6)
	국졸	54 (33.3)	28 (30.1)	26 (39.4)
	중졸 이상	32 (19.7)	28 (30.1)	2 (3.0)
직업유무	유	32 (20.3)	20 (21.7)	12 (18.8)
	무	126 (79.7)	74 (80.4)	52 (81.3)
거주지역	도시	74 (46.0)	38 (41.3)	33 (50.0)
	도시근교	29 (18.0)	20 (21.7)	9 (13.6)
	농촌	58 (36.0)	34 (37.0)	24 (36.4)
평균				
연령(세)		67.93	65.35	71.45
월 소득(원)		713,714	880,000	457,000
월 총지출(원)		327,397.0	424,586.2	186,087.6

* 각 변인에 대한 표본수는 missing cases로 인해 차이가 있음.

<표 3>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두 측면에서 측정된 주거비용 모두 가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유배우자 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지출액이 많았다. 또한 총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주거비 지출비율 역시 무배우자 노인가계가 유배우자 노인가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가계 유형과 주택소유형태의 관련성에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유배우자 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유배우자 노인가계에 비해 주거소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담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할 점은 1995년도 도시근로자 가계의 연평균 주거비 지출비율인 3.7%와 비교하였을 때(통계청, 1996), 유배우자 노인가계는 약 2.22%,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7.46%로 무배우자 노인가계가 직면하는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을, 따라서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어떠할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3> 가계 유형별 주거비용 차이 분석

	주거비 지출액 (원)	주거비 지출비율 (%)
유배우자 노인가계	3,980	2.215
무배우자 노인가계	16,090	7.461
t 값	- 2.362*	- 2.281*

* $p < .05$

2.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 분석

여기에서는 연구문제 1.1과 1.2의 주택소유형태에 의한 경제복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택소유형태와 만족도의 관련성과 주택소유형태별 만족도의 차이, 연구문제 2.1과 2.2의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비용과 만족도의 관계와 주거비용부담 유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주택소유형태와 만족도의 관련성 분석결과는 <표 4>로, 전체 노인가계와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우 주택소유형태와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록 무배우자 노인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주택소유형태와 만족도, 따라서 경제복지는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계의 경우 자가 노인가계의 만족이 비자가 노인가계의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우도 자가 노인가계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반면에 비자가 노인가계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거 소비를 위한 소득효과 즉, 경제적 복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택을 소유

<표 4> 주택소유형태와 만족도의 관련성 분석

노인가계	주택 소유형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소계
전체 노인가계	자가	19 (45.2)	45 (66.2)	46 (90.2)	51 (31.7)
	비자가	23 (54.8)	23 (33.8)	5 (9.8)	110 (68.3)
	소계	42 (100.0)	68 (100.0)	51 (100.0)	161 (100.0)
	χ^2 = 21.761		df = 2		p < .001
유배우자 노인가계	자가	8 (57.1)	30 (76.9)	37 (94.9)	75 (81.5)
	비자가	6 (42.9)	9 (23.1)	2 (5.1)	17 (18.5)
	소계	14 (100.0)	39 (100.0)	39 (100.0)	92 (100.0)
	χ^2 = 10.685		df = 2		p < .01
무배우자 노인가계	자가	11 (39.3)	15 (55.6)	8 (72.7)	34 (51.5)
	비자가	17 (60.7)	12 (44.4)	3 (27.3)	32 (48.5)
	소계	28 (100.0)	27 (100.0)	11 (100.0)	66 (100.0)
	χ^2 = 3.835		df = 2		NS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복지라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노인의 전반적인 복지와 깊은 연관을 갖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주택소유형태와 만족도 차이 분석

노인가계	주택소유형태	만족도
전체 노인가계	자가	3.270
	비자가	2.570
	t 값	-4.901 ***
유배우자 노인가계	자가	3.440
	비자가	2.710
	t 값	-3.404 **
무배우자 노인가계	자가	2.880
	비자가	2.470
	t 값	-1.949

*** p < .001; ** p <.01

연구문제 1.2의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로, 전체 노인가계와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우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노인가계와 유배우자 노인가계는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바, 자가 노인가계의 만족도는 비자가 노인가계의 만족도보다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택소유형태가 노인가계의 경제복지 정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 설명되어진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 2.1의 주거비용과 경제복지의 관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노인가계를 살펴보았을 때, 주거비 지출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총 소비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지출이 클수록 노인가계가 느끼는 만족도는 낮았다. 이는 주거비용(특히 주거비용 부담의 정도를 좀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주거비 지출비율)과 만족도, 따라서 경제복지는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계 유형별로 보면,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우 주거비 지출액과 주거비 지출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주거비 지출액이 많을수록, 주거비 지출비율이 클수록 만족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 지출액 정도나 주거비 지출비율 정도까지의 세밀한 분석이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틀에서의 설명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한편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액 및 주거비 지출비율과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표 6> 주거비용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주거비용	만족도
전체 노인가계	주거비 지출액	- .110
	주거비 지출비율	- .251***
유배우자 노인가계	주거비 지출액	- .278 **
	주거비 지출비율	- .300 **
무배우자 노인가계	주거비 지출액	.072
	주거비 지출비율	- .160

*** p < .001; ** p <.01

연구문제 2.2의 주거비용부담 유무에 따른 경제복지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노인가계와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우 주거비용 부담이 없는 노인가계와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노인가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노인가계가 주거비용 부담이 없는 노인가계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 결국 유배우자 노인가계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은 자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였으며,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더 높은 비자가의 주거소유형태를 더 많이 취하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주거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노인가계는 유배우자 노인가계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주거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노인가계는 무배우자 노인가계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문제 1.1 및 1.2와 연구문제 2.1 및 2.2.의 실증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준 통계 결과는 전체 노인가계와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우 대부분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었지만,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전체 노인가계, 유배우자 노인가계와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이러한 통계적 유의미성의 유무 차이는 가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가계가 어떠한 가계 유형인가 하는 것이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 분석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노인가계의 가계 유형에 따른 상이한 경제복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 주거비용부담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노인가계	주거비용부담[1]	만족도
전체 노인가계	없음	3.270
	있음	2.670
	t 값	2.130 *
유배우자 노인가계	없음	3.360
	있음	2.670
	t 값	1.960 *
무배우자 노인가계	없음	2.690
	있음	2.640
	t 값	.185

1) 주거비용부담 유무는 주거비 지출액 유무와 주거비 지출비율 유무로, 두가지 정의에 따른 분석결과는 동일함.
* $p < .05$

V. 결론 및 제언

주택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라는 성격과 함께 단위 묶음과 단위 비용이 크다는 점, 특히 노인의 경우 비이동성 경향 등으로 인해 소비지출 측면에서 식료품보다 더 비탄력적 특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을 토대로 유배우자 노인가계와 무배우자 노인가계가 경험하게 되는 경제복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계 유형과 주택소유형태는 관련이 있어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비자가가 많은 반면에 유배우자 노인가계는 자가가 많았다. 가계 유형에 따라 주거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무배우자 노인가계는 유배우자 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높았다. 주택소유형태와 노인가계가 경험하는 경제복지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고 비자가 노인가계의 경제복지는 자가 노인가계의 경제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거비용과 노인가계가 경험하는 경제복지는 부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노인가계가 주거비용 부담이 없는 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복지가 낮았다. 또한 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에 의해 측정된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제복지 정도와 무배우자 노인가계의 경제복지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 단독가계의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노인가계와 유배우자 노인가계의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의 차이는 유배우자 노인가계와 무배우자 노인가계가 직면하게 될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가계의 가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주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노인가계의 경제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 분석결과는 노인가계가 어떤 주택소유형태를 갖는가에 의해, 주거비용 부담정도에 의해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복지 정도는 달라짐을 보여준다. 주거공간이 아무리 충분히 공급된다 해도 비자가 노인가계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적정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실효성은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노인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용이 과다하다면 그로 인해 그 노인가계의 경제복지는 어려운 국면에 이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자가 그리고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적정 주거수준에서의 경제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불 가능한 범위의 비용으로도 노인 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 주거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 정책 및 사회경제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한 다양

한 주택유형으로의 주거공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가계의 주택 소유형태나 주거비용 부담은 그들이 경험하는 경제복지를 결정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관련됨을 볼 때, 노인복지 측면에서 주거에 대한 소비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자가 노인가계의 경우도 노인의 비이동성 경향을 감안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주거복지 나아가 전반적인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소유형태와 주거비용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노인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노인기에 내집 마련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계재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혹은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정한 수준에서의 주거공간 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변화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특성이 매우 강한 주거 소비를 토대로 노인 단독가계의 경제복지를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증가하게 될 단독 노인가계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으며 이에 대한 보완·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과 자료 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월세, 전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비자가로 분류하고 자가와 비자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거비용 분석에서도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 차이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월세나 전세만을 비교하더라도 가계가 직면하는 주거비용 부담 정도 뿐 아니라 그 성격에 있어서도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자가를 좀더 세분화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가의 경우도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생겨난 부채 등이 존재할 경우 그 노인가계가 직면하는 경제복지는 그렇지 않은 노인가계가 경험하는 경제복지와는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1995년은 IMF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이전이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가계 소비지출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조사자료의 1995년 수집 시기는 시기적으로 뒤늦은 점이 있음에 그 한계가 있다. 이에 좀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에 소요되는 집세만을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주거공간 비이동성 경향은 집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주거관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주거유지 등 주거관련비용을 모두 포함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소유형태 및 주거비용에 의한 경제복지 분석결과는 노인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제한된 소득 제약과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예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주거문제는 동시에 노인가계의 다른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추후 행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노인 단독가계, 주택소유형태, 주거비용, 경제적 복지

참고문헌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98년 제 1회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발표회.

문숙재·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6(2), 53-65.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박경란·제미경·오찬옥(1995).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 가정

관리학회.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양세정(1991).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양세화 · 오찬옥 · 양세정(1999). 가계특성과 주거비 지출: 근로자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 , 10(2), 235-245.

윤장섭(1982). 주거학. 교문사.

이가옥(1992).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가옥(2000). 노년기 삶의 질:개념 및 지표구성,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 6회 학술세미나.

이승신 · 김기옥 · 김경자 · 심영 ·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심영 · 김대년 · 조명희 · 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 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장은정(1990).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도시 · 농촌 지역간의 비교를 중 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숙(1999).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10(4), 61-73.

정영숙(2000).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59-74.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 과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1996). 1995 도시가계연보.

Abdel-Ghany, M., & Sharpe, D.(1997).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young-old and old-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1), 90-112.

Borsch-Supan, A. & Stahl, K.(1991). Life Cycle Savings and Consumption Constrai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4, 233-255.

Brown, A., & Deaton, A.(1972). Survey on Applied Economics: Models of Consumer Behavior. *Economic Journal*, 82, 1145-1236.

Cochrane, W. W. & Bell, C. S.(1956). *The Economics of Consumption: Economics of Decision Making in the Household.* New York: McGraw-Hill Book.

Danziger, S., Van Der Gaag, J., Smolensky, E., & Taussig, M. K.(1982). The life-cycle hypothesis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5, 208-227.

Deaton, A., & Muellbauer, J.(1980). *Economics and Consumer Behavio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Vaney, S.A.(1995). How well off are older men and women: Evidence from the 1989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RM Biennial*, 121-128.

Harrison, B.(1986). Spending Patterns of Older Persons Revealed in Expenditure Survey. *Monthly Labor Review*, 109(10), 15-17.

Hoyt, E.E.(1959). A New Approach to Standards of Liv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1(2), 83-86.

Hurd M.D. & Wise, D.A.(1989). The Wealth and Poverty of Widows : Assets Before and After the Husband's Death, in The Economics of Aging; ed. D.A. Wise.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Repor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urd, M.D.(1989). The Poverty Widows: Future Prospects, in *The Economics of Aging*, ed. D.A. Wise. 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epor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yrk, H.(1933).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Magrabi, F. M., Chung, Y.S., Cha, S.S., & Yang, S.(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cations.

McLauglin, D.K. & Jensen, L.(1993). Poverty

among older Americans: The plight of nonmetropolitan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48(2), s44-s54.

Michael, R.T., & Becker, G.S.(1973). On the New Theory of Consumer Behavior.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5, 378-396.

Radner, D.B.(1992).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Social Security Bulletin*, 55(3), 3-23.

Raunikar, R., & Huang, C.(1987). *Food Demand Analysis: Problems, Issues, and Empirical Evidence*. Iowa State University.

Schwenk, F.N.(1994). Income and Consumer Expenditures of Rural Elders. *Family Economics Review*, 7(3), 20-27.

Walker, R.S., & Schwenk, F.N.(1991). Income and Expenditure Patterns of Consumer Units with Reference Person age 70 to 80 or older. *Family Economics Review*, 4(1), 8-13.

Weimer, J.P.(1997). Many Elderly at Nutritional Risk. *Food Review*, 20(1), 42-48.

(2002. 8. 21 접수; 2002. 12. 16 채택)